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지웅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72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정지웅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혜영, 남창진,
박 석, 박영한, 서호연,
송경택, 신복자, 이종환,
허 훈 의원(10명)

1.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동물보호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학교 내 동물 해부실습 금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동물학대 예방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동물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안 제6조제1항).
- 나.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
- 다. 학교의 동물 해부실습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을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시행되는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그”로, “학생들”을 “학생”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 지원계획”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예방 교육 시행 및 지원”으로 한다.

제5조 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로, “법인 또는 단체”를 “동물보호 민간단체”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학교의 동물 해부실습 금지) 학교는 「동물보호법」 제50조에 따라 교육과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동물학대</u>”란 「<u>동물보호법</u>」 제2조제1호의2와 같이 <u>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및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시행되는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그 ----- 학생-----</u></p> <p>제2조(정의) -----</p> <p>1. (현행과 같음)</p> <p>2. “<u>동물학대</u>”란 「<u>동물보호법</u>」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p> <p>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제2항</p>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예방 교육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3. 4. (생략)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
-----.

1. ----- 교육-----

2. ----- 예방 교육 시행 및 지원-----

3. 4. (현행과 같음)

제5조(재정 지원) -----

경비-----
-----.

제6조(사무위탁) ① -----

-----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동물보호 민간단체-----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학교의 동물 해부실습 금지) 학교는 「동물보호법」 제50조에 따라 교육과 시험, 연구

제7조 (생 략)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전반의 자구를 수정¹⁾하고,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단서규정을 신설, 제7조에 학교의 동물 해부실습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도의 비용수반은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재정지원) 등 규정의 일부 자구와 인용법령을 수정